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20
----------	-------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김영선 · 김형동 · 조해진
정우택 · 조명희 · 이명수
성일종 · 이종성 · 박형수
김상훈 · 한기호 · 태영호
이달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한 체납자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추심과 청산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함.

그러나 국세 체납자 중 폐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 또는 보유 재산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등의 이유로 생계 곤란 처지에 놓일 수 있음. 이 경우, 생계곤란자로서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국세 납부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음. 이는 징수처 입장에서는 징수 실익이 없고 체납자에게는 사회·경제적 갇셈에 어려움이 따르는 소모적 행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이에,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함(안 제10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5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7절(제10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결손처분

제106조의2(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검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자(법인은 제외한다)의 체납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영위한 사업의 최종 폐업일이 1년이 경과한 사람
2.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및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무재산(제41조 압류금지 재산을 포함한다)이거나, 제57조제1항4호에 따라 사실상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하고 있을 것
3.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및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직전 1개 과세연도의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체납일 것

5.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7.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나, 제25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사람
-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손처분 당시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손처분과 제2항의 결손처분 취소는 제106조의 국세채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7절 결손처분</u> <u>제106조의2(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검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자(법인은 제외한다)의 체납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u> <u>1.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영위한 사업의 최종 폐업일이 1년이 경과한 사람</u> <u>2.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및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무재산(제41조 압류금지 재산을 포함한다)이거나, 제57조제1항4호에 따라 사실상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하고 있을 것</u> <u>3.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및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직전 1개 과세연도의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u> <u>4.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체납일 것</u>

현행	개정안
	5.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7.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나, 제25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사람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손처분 당시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손처분과 제2항의 결손처분 취소는 제106조의 국세채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